

## 책임강의시간 및 강사료지급규정

제정 1986.12. 3  
개정 1992. 9.24  
개정 2009. 3. 1  
개정 2009. 7. 1  
개정 2012. 8. 1

제1 조(목적) 이 규정은 포항공과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교원의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 조(강의의 구분과 정의) 본 대학의 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“특수강의”라 함은 실험, 실습, 실기 및 임상실습 등의 지도와 시범을 말한다.
2. “보통강의”라 함은 전호 이외의 평상수업을 말한다.
3. “특별강의”라 함은 국내외의 저명인사에 의한 수업을 말한다.
4. “초과강의”라 함은 책임시간 이외의 수업을 말한다.
5. “시간강의”라 함은 본 대학 전임교원 이외의 시간강사가 시간제로 담당하는 수업을 말한다.

제3 조(강사료 지급기준) ① 강사료는 교원의 직위 및 강의의 구분에 따라 매학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총장이 정한다.

② 강의에 출강하기 위하여 숙박 또는 여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액의 3배까지 증액할 수 있다.

③ 독립회계단위(독립채산제)로 운영되는 기관의 강사료는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제4 조(책임강의시간) ① 본 대학 전임교원의 연간 책임강의시간은 9시간으로 하되, 인문사회학부 소속 전임교원은 12시간으로 한다.

②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임교원이 본 대학 직제규정 제4장 제12조의 제1항 내지 제4항의 보직 또는 입학사정관을 겸할 경우, 해당 교원의 연간 책임강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(개정 : 2009.7.1)

1. 부총장, 기획처장, 포항가속기연구소장 : 면제
2. 산학협력단장, 처장 : 3시간
3. 대학원장, 전문 및 특수 대학원장, 학과주임교수, 부처장, 독립채산기관장 : 6시간 (단,

인문사회학부장 : 9시간

4. 입학사정관 : 6시간 (단, 인문사회학부 소속 교원 : 9시간)

③ 전항의 보직교원 이외에도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임교원의 경우 그 직무의 정도에 따라 연간 책임강의시간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(개정 : 2009.7.1)

④ 총장의 위촉에 따라 시간강의를 담당한 자에게는 실제로 강의한 시간 수에 의하여 시간 강사료를 지급한다.

⑤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학교가 임시휴업을 하였을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휴업기간중 시간강사가 담당할 시간은 강의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. 제 4 조의 2(초과강사료) 본 대학 전임교원이 제4조 제1항의 연간 책임강의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한 경우 초과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 5 조(강의시간의 제한) 주당강의시간은 전임교원의 경우 15시간, 시간강사의 경우 9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 단, 부득이 하여 담당시간을 초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 6 조(강사료의 계산) 강사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산한다.

1. 특수강의는 2시간을 1시간으로 계산하되 시간강사를 초빙하였을 경우 특수한 사정에 따라 보통강의시간과 동일하게 계산할 수 있다.
2. 강사료는 주단위로 계산한다. 단, 학기말 또는 학년말 종강의에 있어서는 1주 미만을 1주로 계산할 수 있다.

제 7 조(강사료 지급의 특례)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한 교원에게도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1. 시험기간
2. 등록기간
3. 정규강의시간 이외에 총장이 위촉하는 바에 따라 다수의 학생 또는 학생전체를 정기적으로 지도할 때
4. 기타 교내 또는 국가적 행사로 인하여 휴강할 때

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실제시험시간표에 의하여 근무한 교원(시간강사 포함)에 한하며 제3호의 경우는 주당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 8 조(강사료 지급기일) 교원연봉제운영규정 제12조를 적용한다.(개정 : 2009.7.1)

제 9 조(타대학 출강) 본 대학의 교원이 타대학(연구원 포함)에 출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 대학의 담당시간수를 합하여 주당 담당 총시간수가 1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1992년 9월 24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